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람	기관의장

제1022호 2014. 4. 28.(월)

차 례

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-5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----- 1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-5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----- 3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-509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 ----- 5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-510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
칙 일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 ----- 20

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

편집 : 홍보미디어과 [032-560-4142]

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- 57호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,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4. 04. 25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○ 부여·변경 도로명주소 : 인천 서구 푸른로15번길 18외 8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(변경)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유
		별 도 열 략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4. 4. 25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

고시일 : 2014-04-25

연번	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인천 서구 경서동 976-127	푸른로 15번길 18	2013-07-30	푸른로 시작지점부터 약 1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2	인천 서구 경서동 976-134, 976-135	옥빛로 15번길 12	2013-07-30	옥빛로 시작지점부터 약 1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3	인천 서구 가정동 가정지구 B3블럭 3로트	청중로 478번길 18	2012-10-19	청중로 시작지점부터 4,7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4	인천 서구 경서동 962-4	청라커널로 233번길 9	2011-06-29	청라커널로의 시작점에서 2,3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5	인천 서구 경서동 976-111	푸른로 16번길 13	2013-07-30	푸른로 시작지점부터 약 1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6	인천 서구 검암동 678-5	도요지로 202번길 6-12	2009-08-28	도요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,0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7	인천 서구 금곡동 639-4	향동로 61	2009-09-22	옛 자연부락의 명칭을 사용하여 향동로라 명명	
8	인천 서구 경서동 755-10	경서로 34	2009-08-28	경서지구를 관통하여 경서지구의 지명을 따 경서로로 명명	고시누락 (시스템고시일 : 12.05.31)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- 58호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.

2014. 04. 25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인천 서구 심곡로 79-1외 2건

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도로명주소 폐지사유
	별 도	열 략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

고시일 : 2014-04-25

연번	지번주소	도로명주소	폐지일	폐지사유	비고
1	인천 서구 심곡동 301-5	심곡로 79-1	2014-04-15	건축물 말소	
2	인천 서구 왕길동 80-8	한들6로 11	2014-04-25	건물번호합병	한들6로 9로 합병
3	인천 서구 경서동 755-10	경서로32번길 3-3	2012-04-18	건물번호 변경	고시 누락 시스템고시일 : 12.04.18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- 509호

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인천광역시 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」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. 4. 22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(안전행정부 예규) 개정(2014.3.7)에 따라 금고의 보고사항 및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을 개선, 정비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금고의 보고사항 추가 (안 제8조의2제1항)
 - 최근 금융기관의 정보유출 등에 따라 금고은행의 전산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해 상·하반기별 보고사항에 “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”을 추가함.
-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배점기준 정비 (안 [별표1], [별표2])
 -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에 맞게 배점기준 정비 (구와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,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항목에 배점 추가 등)
 -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항목은 “실적”으로만 평가
 - 구와 협력사업 항목은 “계획”으로만 평가
 - 평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 개선 (최소 0.2점에서 최대 1점 → 최소 4%에서 최대 10%)
 - ※ 다만, 「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」, 「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」 항목은 다른 평가항목 적용비율의 1/2 적용



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4. 5. 12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: 세무1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(우)404-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) / ☎ 032-560-4191, FAX 032-560-2723]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4. 참고사항

-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- 규제영향분석서

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의2제1항 중 “평가보고 등을”을 “평가보고,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
을”로 한다.

별표1과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[별표 2]

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(제3조제2항 관련)

I. 일반원칙

1.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,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·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.
2.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%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,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%에서 최소 4%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.
다만, 항목 2(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), 항목 5(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)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/2을 적용함.

II.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
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(33점)

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(10점)

- 평가기준
 - 공인된 국내·외 신용조사 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·평가
- 평가방법
 -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(가장 최근자료 기준)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,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·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

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 (23점)

-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·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,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·확인
-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
 - (1) BIS 자기자본비율 (안정성, 7점)
 - (2) 자기자본이익율 (수익성, 6점)
 - (3) 고정이하여신비율 (건전성, 7점)
 - (4) 대손충당금 적립율 (건전성, 3점)

2.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(18점)

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 (6점)

-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나. 자치단체 대출금리 (4점)

-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다. 공금예금 적용금리 (5점)

-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라.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(3점)

-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

3. 주민이용의 편의성 (18점)

가.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(5점)

-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(6점)

- 최근 수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(7점)

-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,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(전자납부 등) 증진 방안, 파업 등 사고 발생시 대책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4. 금고업무 관리능력 (22점)

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(5점)

-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·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(7점)

-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

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(7점)

-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(안)과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강화계획(안)을 제출받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라.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(3점)

- OCR센터 운영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5.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(9점)

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(5점)

-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, 재해구호 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나. 구와 협력사업계획 (4점)

-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,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8조의2(금고운용 보고)</p> <p>① 금고는 일반회계·특별회계·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<u>평가보고</u> 등을 상·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8조의2(금고운용 보고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<u>평가보고, 전산 시스템 보안관리 상황</u> 등을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

현행				개정안			
항목	세부항목	배점	비고	항목	세부항목	배점	비고
3. 주민이용의 편의성		<u>19</u>				<u>18</u>	
	가.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※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	5		3. 주민이용의 편의성	가.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※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	5	
	나.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	<u>9</u>			나.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	<u>6</u>	
	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	<u>5</u>			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	<u>7</u>	
4. 금고업무 관리능력		<u>18</u>				<u>22</u>	
	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	5		4. 금고업무 관리능력	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	5	
	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	<u>5</u>			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	<u>7</u>	
	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	<u>5</u>			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※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	<u>7</u>	
	라.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	3			라.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	3	
5.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		<u>10</u>				<u>9</u>	
	가. 지역사회에 대한 <u>기여</u>	5		5.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	가. 지역사회에 대한 <u>기여 실적</u>	5	
	나. 구와 <u>협력사업</u>	<u>5</u>			나. 구와 <u>협력사업계획</u> ※ “지역사회에 대한 기여”는 ‘실적’으로만 평가, “구와 협력사업”은 ‘계획’으로만 평가	<u>4</u>	



현 행	개 정 안
<p>[별표 2]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(제3조제2항 관련)</p> <p>I. 일반원칙</p> <p>1.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하고, 필요시 평가대상 금융기관을 등급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.</p> <p>2. 평가 세부항목별(1-가, 나)의 경우는 세세부 항목별)로 대상 금융기관이 부여받는 최소 점수는 배점한도의 60% 이상으로 하고, 순위 및 등급간 점수편차는 최대1점에서 최소 0.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, 세부항목간에 점수 편차도 균등하게 배분 하여야 한다. 다만, 항목 2(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), 항목 5 (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)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0.5점에서 최소 0.1점 구간내에 있어야 한다.</p> <p>3.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부여를 달리 할 수 있다. 가. 평가 세부항목별 금융기관의 순위에 따라 부여하는 점수의 하한을 배점한도의 60% 미만으로 할 수 있다. 나.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제2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.</p> <p>II.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</p> <p>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(35점) 가. (생략) 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 (25점) ○ (생략) ○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(1) BIS 자기자본비율 (안정성, 9점) (2)~(4)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주민이용의 편의성 (19점) 가. (생략) 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(9점) 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(5점)</p>	<p>[별표 2]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(제3조제2항 관련)</p> <p>I. 일반원칙</p> <p>1.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,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·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.</p> <p>2.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%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,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%에서 최소 4%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. 다만, 항목 2(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), 항목 5(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)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/2을 적용함.</p> <p><삭제></p> <p>II.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</p> <p>1. ----- ----- (33점)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----- (23점) ○ (현행과 같음) ○ ----- (1) ----- (안정성, 7점) (2)~(4)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(18점)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----- (6점) 다. ----- (7점)</p>



현 행	개 정 안
<p>4. 금고업무 관리능력 (18점)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(5점)</p> <p>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(5점)</p> <p>○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<u>전산시스템 운영계획(안)</u>을 제출받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</p> <p>라. (생략)</p> <p>5.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(10점)</p> <p>가. 지역사회에 대한 <u>기여</u> (5점)</p> <p>○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, 재해구호 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<u>실적 및 계획 등을</u>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</p> <p>나. 구와 <u>협력사업</u> (5점)</p> <p>○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이나 프로젝트를 <u>추진한 실적 및 추진계획과</u>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을 등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</p>	<p>4. 금고업무 관리능력 (22점)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----- (7점)</p> <p>다. ----- (7점)</p> <p>○ ----- ----- <u>전산시스템 운영계획(안)과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강화계획(안)</u> -----</p> <p>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(9점)</p> <p>가. 지역사회에 대한 <u>기여실적</u> (5점)</p> <p>○ ----- ----- <u>실적을</u> -----</p> <p>나. 구와 <u>협력사업계획</u> (4점)</p> <p>○ ----- -- <u>추진할 계획,</u> ----- ----- -----</p>



규제영향분석서

I. 분석대상 규제개요

1. 규제사무명	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	2. 구분						
		신설	○	강화		내용 심사		존속 기한 연장
3.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	세무1과장 박영길							
4. 근거법령명 등	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02조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 (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)			관 련 규제수		1		
5.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분석방법 - 연간비용 100억원 이상에 해당여부 : 해당없음 - 규제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에 해당여부 : 해당없음 ⇒ 피규제자 수 : 미정 (현행 단수금고 유지시 1개) - 명백하게 경쟁 제한적 성격의 규제에 해당여부 : 해당없음 -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규제의 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해당여부 : 해당없음 							
6. 규제존속기한	○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: 지속적인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점검 필요							
7. 종전규제 및 신설(변경) 규제의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종전의 규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금고는 일반회계·특별회계·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·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. ○ 신설(변경) 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·하반기별 금고 보고사항에 “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”을 추가함. 							



II.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

1. 규제 신설의 필요성

- 최근 다수의 금융기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의 발생으로 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구금고 은행의 전산시스템 보안 관리능력 강화 필요

2.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

-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, 회계별 세입·세출업무의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 기여
- 상·하반기별 금고의 “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” 점검 실시

3.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

- 해당없음

4.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

- 법적근거
 -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정한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(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)이 2014. 3. 7 개정되면서 구금고 은행은 상·하반기별로 “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”을 보고토록 함.
- 명료성
 -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제8조의2(금고운용보고) 보고내용 명시

5. 규제집행의 적정성(조직·인력·예산)

-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·인력·예산 판단 : 해당없음
- 기존조직·인력·예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 : 해당없음

6. 구비서류·처리절차 등의 적정성

- 해당없음

III. 기타 기재사항

1. 사후 성과평가를 위한 기준 제시

- 해당없음

2. 기타 참고사항

- 해당없음

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- 510호

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」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. 4. 22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금고 지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「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평가기준 등의 개정사항과 관련된 규칙의 관련 서식 등을 정비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용어의 약칭, 띄어쓰기,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
(안 제명, 제1조, 제3조, 제5조, 별지 제2호서식)
- 「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금고 지정 평가항목 개정사항에 맞춰 금융기관 심사결과 집계표 서식의 일부 평가항목 정비
(안 별지 제3호서식)
-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부서 명칭 변경 (안 별지 제4호서식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4. 5. 12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 : 세무1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(우)404-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) / ☎ 032-560-4191,
FAX 032-560-2723]

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4. 참고사항

-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



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

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명 “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”을 “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구금고(이하 “금고”라 한다)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서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평가기준”을 “「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는 조례 제3조의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(이하 “금고”라 한다) 평가기준”으로 한다.
제5조 중 “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8조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제3조의 규정을”을 “제3조를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금고지정”을 “금고 지정”으로, “「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3항에 따라”로, “인천광역시서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”를 “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”로 하고, “인천광역시서구청장”을 “인천광역시 서구청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심사기준란의 1.나. 중 “무수익여신비율”을 “고정이하여신비율”로 하고, 2.다. 중 “공공예금”을 “공금예금”으로, 2.라. “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”를 “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”로 하며, 3.가. 중 “지점현황”을 “지점의 수”로 하고, 5.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

- 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
- 나. 구와 협력사업계획



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기관란 중 “(세무과)”를 “(세무1과)”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인천광역시 서구청입니다(<http://www.seo.incheon.go.kr>)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u>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(이하 "구"라 한다) 구금고(이하 "금고"라 한다)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심의 및 평가) ① <u>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서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·평가한 후 심사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고, 위원장은 이를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<u>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3조(심의 및 평가) ① 「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는 조례 제3조의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(이하 "금고"라 한다) 평가기준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

제5조(금고변경 및 해지를 위한 심의·평가)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변경 또는 해지 결정을 위한 심의·평가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3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(별지 제2호서식)

금융기관 제안서 심사결과	
<p>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관련 ()의 제안서 심사결과에 따라, 총점 점(평균 점)을 획득하였음을 「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인천광역시서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(인)</p> <p>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</p>	
심사결과 (의견)	
첨부서류	금융기관 심사표 및 집계표 각 1부

제5조(금고변경 및 해지를 위한 심의·평가) --- 제8조제1항에 따른 -----

----- 제3조를 -----

(별지 제2호서식)

금융기관 제안서 심사결과	
<p>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관련 ()의 제안서 심사결과에 따라, 총점 점(평균 점)을 획득하였음을 「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장 (인)</p> <p>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</p>	
심사결과 (의견)	
첨부서류	금융기관 심사표 및 집계표 각 1부



(별지 제3호서식)

금융기관 심사결과 집계표

금융기관명 :

심사기준	위원별											합계	평균
총 계													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												
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													
- 국외평가기관													
- 국내평가기관													
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													
- BIS 자기자본비율(안정성)													
- 자기자본이익율(수익성)													
- 무수익여신비율(건전성)													
- 대손충당금 적립율(건전성)													
2.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													
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													
나. 자치단체 대출금리													
다. 공공예금 적용금리													
라.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													
3. 주민이용의 편의성													
가. 관내 지점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													
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													
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													
4. 금고업무 관리능력													
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													
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													
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													
라.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													
5.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													
가.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													
나. 구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													

(별지 제3호서식)

금융기관 심사결과 집계표

금융기관명 :

심사기준	위원별											합계	평균
총 계													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												
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													
- 국외평가기관													
- 국내평가기관													
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													
- BIS 자기자본비율(안정성)													
- 자기자본이익율(수익성)													
- 고정이하여신비율(건전성)													
- 대손충당금 적립율(건전성)													
2.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													
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													
나. 자치단체 대출금리													
다. 공공예금 적용금리													
라.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													
3. 주민이용의 편의성													
가. 관내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													
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													
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													
4. 금고업무 관리능력													
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													
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													
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													
라.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													
5.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													
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													
나. 구와 협력사업계획													



(별지 제4호서식)

금융기관 제안서 접수증

제출인	상 호		성 명	
	주 소			
접수사항	접수일자		접수번호	
	접수내역			
	접수기관	인천광역시 서구 (세무과)	접수자	
비 고				



금융기관 제안서 접수증

제출인	상 호		성 명	
	주 소			
접수사항	접수일자		접수번호	
	접수내역			
	접수기관	인천광역시 서구 (세무과)	접수자	
비 고				

(별지 제4호서식)

금융기관 제안서 접수증

제출인	상 호		성 명	
	주 소			
접수사항	접수일자		접수번호	
	접수내역			
	접수기관	인천광역시 서구 (세무1과)	접수자	
비 고				



금융기관 제안서 접수증

제출인	상 호		성 명	
	주 소			
접수사항	접수일자		접수번호	
	접수내역			
	접수기관	인천광역시 서구 (세무1과)	접수자	
비 고				

